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다609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민동철, 허현희  
피고, 피상고인 이○○  
인천 ○○  
피고보조참가인 신○○  
서울 ○○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2나37541 판결  
판 결 선 고 2004.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귀 사이에 보디가드상해보험계약의 약관과 달리 오토바이 운행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직원의 기망이나 ○○귀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3. 9. 19. ○○귀의 승계인인 피고가 이를 취소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한, ○○귀 또는 피고가 위 개별 약정 당시부터 기망 또는 착오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는 위 개별 약정이 체결된 1999. 11. 16.경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오토바이 운행중의 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은 현대귀의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위 개별 약정이 면책사유를 피보험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_\_\_\_\_

                          대법관            변재승 \_\_\_\_\_

                          대법관            강신욱 \_\_\_\_\_

주 심            대법관            고현철 \_\_\_\_\_